

## 제2장 상해보험비

I

### 사업개요

#### ① 목 적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

#### ② 지원근거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'11.3.30.제정)
- 「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('12.5.11.제정)

#### ③ 지원방법

- 한국사회복지공제회 “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” 제도를 통하여 지원

#### <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>

-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, 어린이집,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직원 1인당 年 보험료(2만원) 중 50%(1만원)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제보험

- 年 보험료 20천원 = 정부(10천원) + 경기도\*(5천원) + 시군(5천원)

\* 1인당 연 2만원의 보험료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본인부담금 50%(10천원) 지원

\* 도 직접시설(기관) : 경기도(10천원)

### ① 가입대상

- 공통요건

-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,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자
- 만 15세 이상인 자

### ② 지원대상

- 지원대상자 :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-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월12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

-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포함(단기간 근로자는 제외)

\* 비정규직, 단위사업·특화사업 종사자 포함, 생활시설 야간교대근무자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여부 판단

### ③ 지원 제외대상

- 사회복무요원(공익요원), 자원봉사자 \* 가입해도 보상 불가

-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

- 가입대상시설 이용자(수혜자)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자

-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(3번 코드)

### ④ 가입신청 기간 및 보장 기간

- 가입신청(청약) 기간 : 2024년 3월 18일(월) ~ 22일(금)

- 보장 기간 : 매년 4월 1일 16시부터 1년간

\* 지자체 일괄 가입은 전체 지원시설의 보장기간을 통일해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최초 가입이후 신규시설(직원) 추가 지원가입 불가

\* 단, 시설별 최초 가입 인원 내 입·퇴사자 발생 시, 대체처리(가입자 교체)는 가능

## 5 신청방법

- 시설담당자(대표1인)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(www.kwcu.or.kr) 온라인 신청

## 6 보장사항

- 가입자의 일상생활(업무 외 사고 포함)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(상해)로 인해 사망·후유장해, 입원·골절·화상 등 의료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진단 받은 경우 위로금 성격 일당비(진단비)와 의료지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,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

<보장내용 및 지급금액>

보장내용	지급금액
상해 사망	3,000만원 (정액)
상해 후유장해	3,000만원 * 장해율 (3,000만원 한도)
상해 입원일당	1일당 2만원 (정액, 첫날부터 180일 한도)
상해 골절진단비	사고 건당 15만원 (정액, 건수제한 없음)
상해 화상진단비	사고 건당 20만원 (정액, 건수제한 없음)
*상해 의료지원비	사고 건당 50만원~500만원 (정액, 건수제한 없음)

<상해의료지원비 지급조건표>

급수	본인부담 병원비	지급금액
1급	1,000만원 이상	500만원
2급	9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	450만원
3급	8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	400만원
4급	700만원 이상 ~ 800만원 미만	350만원
5급	600만원 이상 ~ 700만원 미만	300만원
6급	500만원 이상 ~ 600만원 미만	250만원
7급	400만원 이상 ~ 500만원 미만	200만원
8급	300만원 이상 ~ 400만원 미만	150만원
9급	200만원 이상 ~ 300만원 미만	100만원
10급	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	5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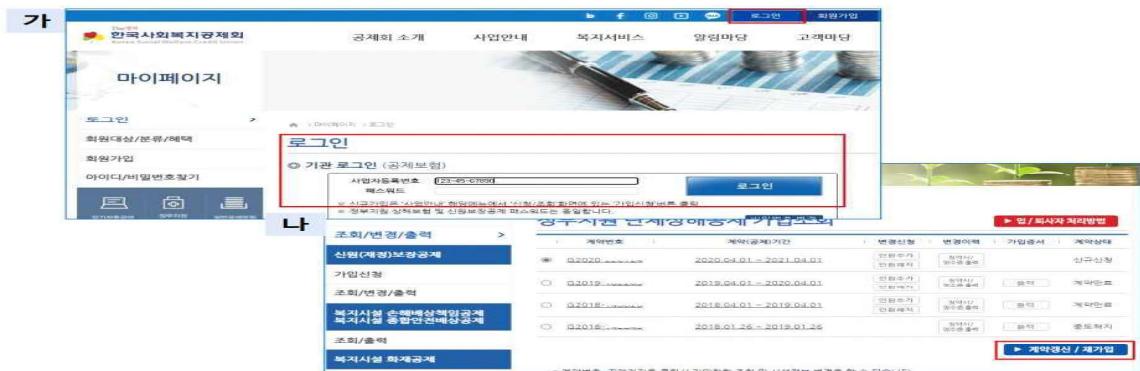
\*상해의료지원비 : 상해사고로 인해 고액의 본인부담금 지출 시, 지급조건표에 의거해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 당 5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

## 7 신규가입 및 기존 가입 시설 갱신방법

- (신규가입) 홈페이지 접속 후,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신청 진행



- (갱신가입) 기관 로그인(사업자번호, 패스워드 입력) 후, 계약갱신 진행



\* 홈페이지 가입(갱신)안내 동영상 참조(패스워드 분실 시, 전화 02-3775-8899, ARS 2번 문의)

## 8 공제금(보험금) 청구 프로세스

- 홈페이지 공제금(보험금) 청구 양식 다운로드 후,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발송



\* 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: (전화) 02-3775-8899, ARS 2번 문의

## 9 지원대상자 변경

- 퇴사(해지) 등 인원 변동 시, 당해 신청인원(지원인원) 내 대체신청 가능

\* 홈페이지 입/퇴사자 처리방법 참조(패스워드 분실 시, 전화 02-3775-8899, ARS 2번 문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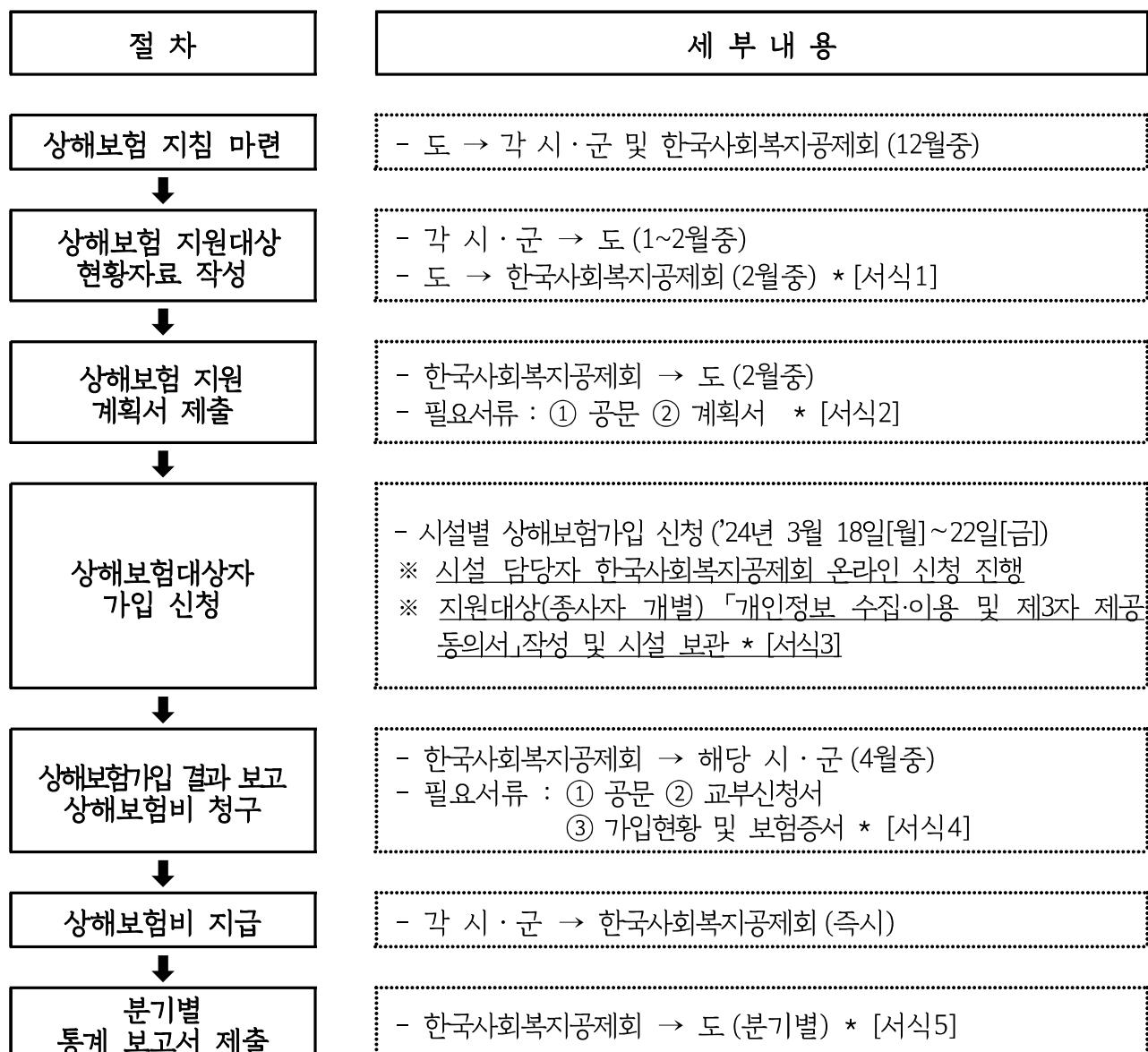
### III

## 운영절차

### ① 기관별 역할

- 경기도 : 지침 마련, 가입 홍보, 보험료 예산 지원(도비)
- 시·군 : 대상자 선정, 상해보험료 지급, 보험료 예산 지원(시군비)
- 한국사회복지공제회 : 보험가입, 보험료 청구 및 보험 가입 현황관리

### ② 세부 내용



**서식1****지원대상 현황자료 (시군 → 도 → 공제회)**

시군	시설 구분	시군정보			시설정보							*지원인원(명)
		소관부서	담당자	연락처	시설명	사업자번호 (또는 고유번호)	장기요양기호	가입신청 담당자	직위(직책)	담당자 휴대폰	시설 연락처	
예)	노인	복지정책과	***	***	** 복지관	***_**_*****		***	**	***_***	***_***	00명
	아동											
	장애인											
	정신보건											
	노숙인											
	사회복지관											
	지역자활											
	결핵·한센											
	여성											
	다문화											
	청소년											
	:											

**<유의사항>**

- 사업자번호(고유번호), 전화 및 팩스번호 등 정확한 지원시설 정보 취합 필요
- ※ 지원인원 : 경기도 지원대상 기준 시설 내 지원인원 수

**서식2****상해보험비 지원 계획서 (공제회 → 도)**

예시

**한국사회복지공제회**

수신자 경기도지사

제 목 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계획

-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
- 0000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(단위 : 명/천원)

가입자 예상자수	신청금액	비고

붙임 사업계획서 1부. 끝.

**한국사회복지공제회****직인**

기안자

검토자

결재권자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## [예시] ○○○○년 상해보험비 지원 사업계획서

### □ 사업명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

□ 사업근거 :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

### □ 사업목적

○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

### 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4.4.1. ~ 2025.4.1

○ 사업량 : ※ 사업대상(수혜대상) 및 인원수 등 기재

### □ 추진내용 및 방법

- 
- 
- 

### □ 기대효과

- 
-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,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

## □ 소요예산 세부내역 (예시)

- #### ○ 총사업비 : 천원 ( 보조금 천원 )

- ### ○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### 서식3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####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한국사회복지공제회 「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」 보험가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. 제공된 정보는 아래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되며, 내용을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	<p><b>[개인정보 이용 목적]</b>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(보험) 가입 및 관련 정보 안내</p> <p><b>[개인정보 수집 항목]</b> 필수항목 : 시설 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등 현황), 가입 대상자 성명, 생년월일, 담당업무</p> <p><b>[보유기간]</b> 제공 시점부터 1년</p>	<p><b>동의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<b>미동의</b>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※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(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.)</p>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	<p><b>[제공받는 자]</b> 한국사회복지공제회</p> <p><b>[개인정보 제공 목적]</b>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(보험) 가입</p> <p><b>[개인정보 수집 항목]</b> 필수항목 : 시설 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등 현황), 가입 대상자 성명, 생년월일, 담당업무</p> <p><b>[보유기간]</b> 제공 시점부터 1년</p>	<p><b>동의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<b>미동의</b>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※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(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.)</p>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가입 대상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시설장 귀중

※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시, 개별 가입 대상자에게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」를 작성 및 제출받아 해당 시설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양식 다운로드) 공제회 홈페이지 - 고객마당 - 자료실 첨부파일 게재